

정정신고(보고)

2025년 1월 17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퇴직연금토탈리턴증권투자신탁 제1호 [채권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04. 17

3. 정정 사유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(97.5% VaR) 반영, 재무정보 확정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외국납부세액)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표지	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 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	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	-	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 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 이 경과하였으므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이하 ' 97.5% VaR ')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.5% VaR 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4.83% 입니다.	산출한 97.5% VaR 는 9.28% 입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2)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</p> <p>(추가)</p>	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2)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</p> <p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의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의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의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